

# 경인식약청 수입검사 월간 뉴스레터

제 78호 '25.9.

## 수입검사관련 정보

### ◆ 수입식품등 검사지시

구분	품목	주요내용
위해정보에 따른 검사 강화	가공식품 등	중국산(해외제조업소 ANHUI HAOHAO TECHNOLOGY CO., LTD) / 과자류 / 사이클라메이트(Cyclamate)
		이탈리아(CIRESA S.R.L., EST NO: CE IT 03 165) / ①'25.8.5. 일 선적 일 기준 해당 작업장의 축산물(유가공품)에 대해 수입 중단 조치, ②해당 작업장의 수입중단 이전 선적된 치즈류 / 리스테리아 모노 사이토제네스
		이탈리아(MOLINO PEILA SPA) / 곡류가공품(옥수수 100%에 함) / 현장검사(곰팡이발생, 덩어리화, 이취 여부 확인 등)
		베트남(해외제조업소 BUI QUYNH HUONG LIMITES COMPANY, VN 000010362) / 가공식품 / 수입중단('25.7.31.선적일부터)
		대만(해외제조업소 BUI 타무 쟈 ENTERPRISE CO., LTD., TW0000000 101) / 모든식품 / 수입중단('25.7.29.선적일부터)
	농·축·수산물	베트남산(해외제조업소 SOUTHERN SHRIMP JOINT STOCKCOMPANY-CA MAU BRANCH(SVS-CA MAU), VN000006418, DL544) / 독시사이클린(Doxycycline)
		브라질(C.vale cooperativa agroindustrial., BR100000017, EST No. S IF3300) / 해당 해외작업장에서 생산한 닭고기(부산물 포함)
		중국산(해외제조업소 ANHUI HAOHAO TECHNOLOGY CO., LTD) / 과자류 / 사이클라메이트(Cyclamate)
		칠레(등록제조업소 10664) / 모든 품목 / '25.8.7. 선적분부터 수입 중단
		프랑스(해외작업장 SE CHAVEGRAND, FR100000068) / 해당 해외작업장에서 제조한 '치즈' /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
		캐나다(G3 CANADA LIMITED) / 밀(씨앗) / 현장검사(이물확인 등)
		멕시코(EXPORTRADORA DE CFE CALIFORNIA S A DE C V) / 커피 원두(씨앗, 건조) / 피페로닐부투사이드(Piperonyl butoxide)

◆ 추석명절 대비 검사강화 지시 (기간: '25.9.8~'25.9.19, 접수일기준)

검사 대상		검사항목
분류	품목명	
농산물 (6품목)	고사리, 고비	납, 카드뮴
	깐도라지, 깐밤	이산화황
	목이버섯, 당근	농약(514종)
축산물 (1품목)	돼지고기	동물용의약품 살부타몰
수산물 (5품목)	명태(냉동), 참조기(냉동), 문어(냉동) *기타 세부 처리형태 무관	납, 카드뮴, 수은
	새우류 (냉동, 살) *기타 세부 처리형태 무관	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, 독시싸이클린
	부세	엔로플록사신/시프로플록사신
가공식품 (15품목)	삶은 고사리 및 고비(과·채 가공품)	납, 카드뮴
	어육살	보존료
	식물성유지류 (대두유, 옥배유, 유채유, 현미유, 참기름, 추출참깨유, 들기름, 추출들깨유, 흥화유, 해바라기유, 면실유, 낙화생유, 올리브유)	벤조피렌, 산가

## 이 달의 보도자료

## 한-에콰도르 수산물 전자위생증명 양해각서 체결로 디지털 수출입 안전행정 구현

- 전자증명서 송수신 시스템 마련.....위생증명서 위변조 차단으로 안전관리 강화
- 수입 영업자 시간·비용 절감 및 소비자에게 신선한 수산물 공급 가능

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에콰도르산 수산물 수입 시 제출해야 하는 위생증명서\*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8월 15일(현지시간 8월 14일) 에콰도르 과야킬에서 에콰도르 생산무역투자수산부(MPCEIP\*\*)와 ‘한-에콰도르 수산물 전자증명 이행약정’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
\* 수산물 위생약정에 따라 중금속, 미생물, 동물용의약품 등 우리나라 기준에 적합하게 위생적으로 생산됨을 수출국에서 보증하는 증명서

\*\* MPCEIP: Ministerio de la Producción, Comercio Exterior, Inversiones y Pesca  
(영문) Ministry of Production, Foreign Trade, Investment and Fisheries

이번 이행약정 체결에 따라 그간 종이로 제출하던 위생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\*을 활용한 전자위생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구축·연계한다.

\* 거래 또는 문서 데이터를 담은 정보 ‘블록’을 암호화해 서로 연결(‘체인’)하고 분산 저장함으로써 위·변조가 불가능한 정보기술

시스템 구축·연계로 한-에콰도르 간 디지털 수출입 행정이 구현되면 위생증명서의 위변조를 방지하여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.

아울러 수입 영업자는 수입신고 시 에콰도르에서 전송된 위생증명서번호를 조회해 시스템에 입력하면 전자위생증명서가 자동으로 첨부되어 간편하게 신고(25.11월~)가 가능해진다. 또한, 신속한 통관으로 영업자는 수입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\*하고, 국민은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.

\* 예시 : 에콰도르에서 항공을 통한 서류 운송료 1건당 115,100원 × '24년 수입 건수 167건 = 2천만원 비용 절감 ('24년 정보 기준)

참고로 필리핀('22.6.), 칠레('22.8.), 노르웨이('23.5.), 러시아('24.12.), 페루·태국('25.5.)에 이어 일곱번째로 전자위생증명을 적용하는 에콰도르는 세계 4위 새우(양식) 생산국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약 10.3%를 차지\*하고 있으며, '24년 기준 흰다리새우 및 붕장어 국내 수입량 2위를 차지\*\*하고 있다.

\* 에콰도르 수산업 정보(KORTA)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(KMI)

\*\* 흰다리새우 수입량의 25.8%(3,278톤), 붕장어 수입량의 15.8%(235톤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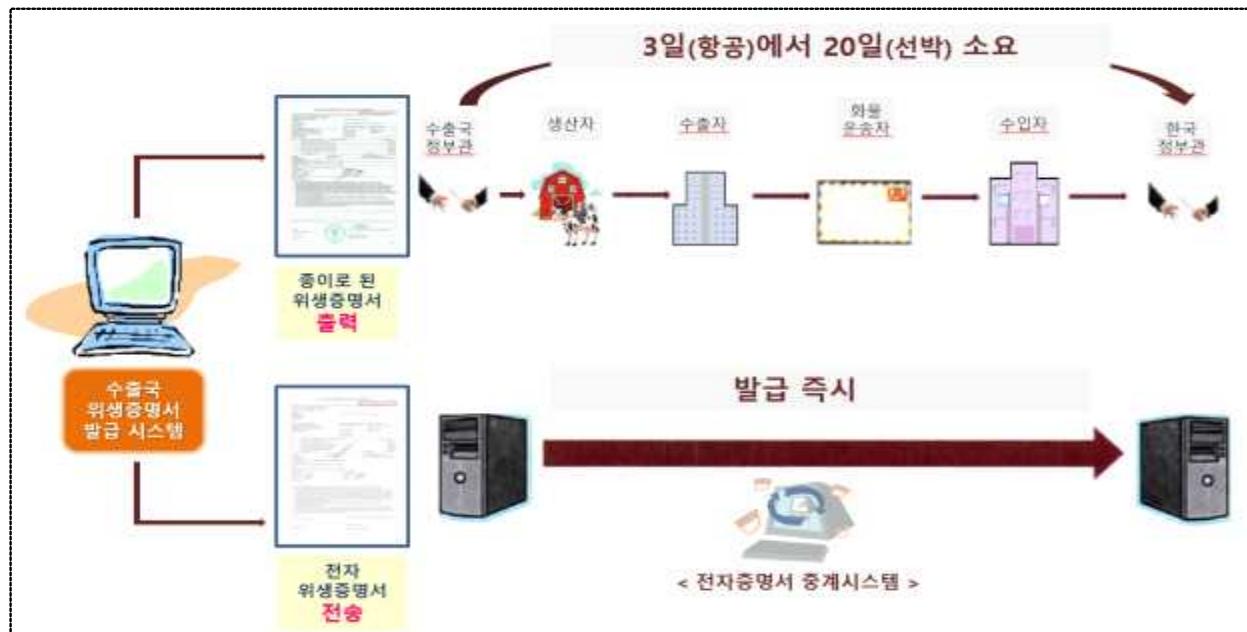
식약처는 앞으로도 주요 식품 교역국과 전자 위생증명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예정이며, 수입 업무 효율화와 영업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안전성과 관련 없는 검사 절차는 개선하고,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는 강화할 계획이다.

- <붙임> 1. 전자위생증명 체계 및 수입신고 방법  
2. 최근 3년간 에콰도르산 수산물 수입현황

담당 부서	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	책임자	과장	순영욱	(043-719-2201)
		담당자	사무관	강윤숙	(043-719-2240)

## 불임 1 전자위생증명 체계 및 수입신고 방법

### □ 전자위생증명서 발급시스템 체계도



### □ 수입신고 방법

수입업자 등은 관세청 통관단일창구(Unipass) 누리집\*에 접속하여 수입신고서에 수출 위생증명서 번호를 입력하면 수입신고 가능

\* <http://unipass.customs.go.kr>

관세청 통관단일창구의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화면	
<input type="text" value="AU"/> <input type="button" value="조회"/> <input type="text" value="가중포장연"/> <input type="button" value="조회"/> <input type="text" value="국내도착항"/> <input type="button" value="조회"/> <input type="text" value="선적항"/> <input type="button" value="조회"/> <input type="text" value="품목제조보고번호"/> <input type="radio"/> 예 <input type="radio"/> 아니오	<p>수입전자위생증명서 검증 - Microsoft Edge</p> <p><a href="https://unipass.customs.go.kr/csp/csw/reqlqstm/apfmmnt/foodEtcImpDcshMtCtr/openCSW0101017P.do">https://unipass.customs.go.kr/csp/csw/reqlqstm/apfmmnt/foodEtcImpDcshMtCtr/openCSW0101017P.do</a></p> <p>수입 전자 위생 증명서 검증</p> <p>* 수출국으로부터 발급받은 전자 위생 증명서 번호를 입력하여 식약처와 연동으로 증명서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. * 검증된 증명서 여러 건을 한번에 수입신고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.</p> <p>*위생증명서번호 9827386</p> <p>초기화      조회</p> <p>증명서번호      품목명      수출국      신고일자      증명서</p> <p>9827386      CHILLED BEEF OFFAL *VP* THIN SKIRT 외 13간      Australia      2021-04-30      증명서</p> <p>관세청 온라인수입식품신고 화면에서 각 국가에서 전송된 위생증명서번호로 조회한 후 선택하여 입력</p>

## 불임 2

## 최근 3년('22-'24.8월) 에콰도르산 수산물 수입현황

(단위: 건, 톤, 천\$)

순 위	품 목	2022			2023			2024		
		건수	증량	금액	건수	증량	금액	건수	증량	금액
총 합 계		298	5,990	38,982	204	3,962	24,106	189	3,657	20,856
1	흰다리새우(냉동)	287	5,802	38,006	191	3,716	23,210	167	3,278	19,568
2	붕장어(냉동,필렛(F))	4	113	463	7	161	694	10	235	1,003
3	오징어(냉동)	-	-	-	1	46	64	3	96	190
4	황새치(냉동)	1	44	379	-	-	-	-	-	-
5	황다랑어(냉동,필렛(F),횟감)	1	5	23	1	8	33	3	15	37
6	긴기리지(냉동)	-	-	-	-	-	-	2	26	38
7	눈다랑어(냉동,필렛(F),횟감)	1	9	51	1	7	44	4	7	19
8	오징어(냉동,다리)	1	13	30	1	10	21	-	-	-
9	오징어(냉동,동체)	-	-	-	1	14	27	-	-	-
10	황새치(냉동,필렛(F),횟감)	1	4	30	1	1	13	-	-	-
11	고등어(냉동)	1	0	0	-	-	-	-	-	-
12	보구치(냉동)	1	0	0	-	-	-	-	-	-

\* '0'은 0.5톤 및 0.5천\$ 미만임.



## 식품 표시 더 잘 보이게, 푸드QR 활성화

-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및 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, 「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」 개정·공포(25.8.29.)
- 소비자 알 권리·편의성 보장, 업계 비용 부담 완화 및 탄소 중립 기여

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식품의 제품명, 소비기한,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크고 잘 보이게 표시하고, 나머지 정보는 푸드QR 등 e라벨\*로 제공하는 내용의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과 세부 표시방법을 담은 하위 고시\*\*를 8월 29일 개정·시행한다고 밝혔다.

\* 푸드QR 등 바코드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식품 표시 사항

\*\* 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, 「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」

식약처는 2024년 11월 26일부터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면 식품 안전 정보는 물론 건강·생활정보\*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(푸드QR)를 운영중이다.

\* ▲식품표시, 회수,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안전정보 ▲원재료, 영양성분 등 건강정보  
▲조리법 등 생활정보 등

그간 제한된 식품 포장 면적에 표시되는 정보가 늘어나고 글자가 점차 작아지면서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데 불편이 있었으나, 금번 개정을 통해 업계는 자율적으로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정보는 제품에 크게 표시해 더욱 잘 보이게 하고, 나머지 정보는 푸드QR 등으로 제공해 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.

개정된 「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」의 주요 내용은 ①식품 표시정보의 e라벨 허용 범위 확장 ②e라벨 적용 식품의 글씨 크기 확대 등이다.

**①** 종전에는 식품유형, 용기·포장재질, 보관방법 표시정보만 푸드QR로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었으나, 앞으로는 일부 영양성분 또는 원재료명, 업소 소재지 등의 식품 정보도 제공할 수 있다.

**② e라벨 적용으로 식품의 표시 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어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, 소비기한, 알레르기 유발물질(22종) 표시 등 중요 정보는 잘 보이도록 글씨를 크게 표시(10→12포인트)해야 한다.**

하위 고시인 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, 「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」의 주요 개정 내용은 푸드QR 적용 식품의 ①QR코드 표시 위치 ②원재료명 및 영양성분 세부 표시방법 ③식품유형별 기타표시사항의 e라벨 허용 범위 등이다.

**① 식품 표시정보가 담긴 푸드QR 등 QR코드는 주표시면이나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표시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.**

**② 모든 원재료 정보는 푸드QR로 제공하되, 제품 포장지에는 많이 사용한 원재료 3개와 함께 식품첨가물 주용도를 3개 이상 표시하여야 한다. 또 모든 영양성분 정보를 푸드QR로 제공하는 경우 열량, 나트륨, 당류 및 트랜스 지방은 반드시 제품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한다.**

**③ 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에 정한 기타표시사항 중 소비자 안전, 보관·취급과 관련된 중요 정보\*는 제품 포장지에 반드시 표시하되 행정 관리 목적의 정보\*\*는 푸드QR로 제공할 수 있다.**

\* 젤리 섭취 시 주의사항, 해동된 냉동제품 재냉동 금지 등

\*\* 기준·규격 적용에 활용하는 '산성통조림', '살균제품', '멸균제품', '유통처리식품' 등

식약처는 이번 푸드QR 활성화를 위한 제도 시행에 따라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와 정보 제공의 편의성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

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([www.mfds.go.kr](http://www.mfds.go.kr) > 법령/자료 > 법령정보 > '법·시행령·시행규칙'과 '고시훈령예규'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- <붙임>
1. 푸드QR 적용식품 표시제도 개요
  2. 개정사항 적용 표시 도안(예시)

담당 부서	식품안전정책국 식품표시광고정책과	책임자	과장	이호동 (043-719-2191)
		담당자	사무관	조혜영 (043-719-2182)

**붙임1****푸드QR 적용식품 표시제도 개요****□ 표시대상 구분**

제품 포장지 표시대상	푸드QR 제공 가능 표시 대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제품명</li> <li>■ 내용량</li> <li>■ 영업소 명칭</li> <li>■ 소비기한 등 날짜표시</li> <li>■ 보관방법</li> <li>■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(질소가스충전 표시 제외)</li> <li>■ 원재료명(배합비율 상위 3순위 원재료 및 식품첨가물의 주용도 제외)</li> <li>■ 영양성분(4종: 열량, 나트륨, 당류, 트랜스지방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영업소 소재지</li> <li>■ 품목보고번호</li> <li>■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(질소가스충전)</li> <li>■ 원재료명(배합비율 상위 3순위 원재료 및 식품첨가물의 주용도 제외)</li> <li>■ 영양성분(열량, 나트륨, 당류, 트랜스지방 제외)</li> <li>■ 식품유형</li> <li>■ 용기·포장 재질</li> </ul> <p>* 생략한 표시사항을 포함한 의무표시사항 모두 푸드QR로 정보 제공</p>

**□ 글씨크기 확대**

	현행	개선	예외
글씨크기	10pt 이상	12pt 이상	단, 식품 용기·포장의 형태, 크기의 다양성 및 품목별의 무표시사항의 차이로 인해 기본원칙을 준수하지 못하는 품목만 예외 규정
장평	90% 이상 (면적 100cm <sup>2</sup> 이하 50% 이상)	90% 이상 (축소 미인정)	

※ 12포인트 이상 글씨크기 표시 예외 대상 면적별 글씨크기

식품 및 축산물	(1) 정보표시면적 50cm <sup>2</sup> 이상~100cm <sup>2</sup> 미만 : 7포인트 이상 (2) 정보표시면적 50cm <sup>2</sup> 미만 : 6포인트 이상 (3) 유리병 형태의 소주, 맥주 제품 : 10포인트 이상
건강기능식품	(1) 정보표시면적 100cm <sup>2</sup> 이상~200cm <sup>2</sup> 미만 : 10포인트 이상 (2) 정보표시면적 50cm <sup>2</sup> 이상~100cm <sup>2</sup> 미만 : 7포인트 이상 (3) 50cm <sup>2</sup> 미만 : 6포인트 이상

물입2

## 개정사항 적용 표시 도안(예시)

## □ 식품 및 축산물의 표시

제 품 명	○○○ ○○
식품유형	○○○(○○○○○○○*) *기타표시사항
영업소(장)의 명칭(상호) 및 소재지	○○식품, 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길 ○○
소비기한	○○년○○월○○일까지
내 용 량	○○○ g
원재료명	○○, ○○○○, ○○○○○○, ○○○○○, ○○, ○○○○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○○ ○○*, ○○*, ○○* 함유(*알레르기 유발물질)
보관방법	냉장보관
용기(포장)재질	○○○○○
품목보고번호	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-○○○
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이 제품은 ○○○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시설 에서 제조</li> <li>■ 부정 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</li> </ul>



푸드OR 적용

제품명	○○○ ○○
영업소명칭	○○식품
소비기한	○○년○○월○○일까지
내용량	○○○ g
원재료명	○○, ○○○○, ○○○○○○, 감미료 ○○*, ○○○*, ○○* 함유(*알레르기 유발물질)
세부 표시정보는 여기서 스캔하세요	
보관방법	냉장보관
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이 제품은 ○○○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시설 에서 제조</li> <li>■ 본점 불량신고 시 고의 번어이 1399</li> </ul>

## □ 영양성분 표시

영양정보		총 내용량 00g 000kcal
총 내용량당		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
나트륨 00mg	00%	
탄수화물 00g	00%	
당류 00g	00%	
지방 00g	00%	
트랜스지방 00g		
포화지방 00g	00%	
콜레스테롤 00mg	00%	
단백질 00g	00%	

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(%)은 2,000kcal 기준  
이므로 개인의 필요 열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


푸드OR 적용

<b>영양정보</b>	총 내용량 00g 000kcal
총 내용량당	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
<b>나트륨 00mg</b>	<b>00%</b>
<b>당류 00g</b>	<b>00%</b>
<b>트랜스지방 00g</b>	
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(%)	은 2,000kcal 기준 이므로 개인의 필요 열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
**법령 등 개정 사항****◆ 「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고시 (제2025-59호, '25.8.28.)****가. 수산물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분류 기준 완화(안 제7조)**

- 수산물 동일 어종임에도 제품형태(냉장, 냉동 등)나 처리형태(원형, 자숙여부 등)가 다르면 동일 품명으로 인정하지 않던 것을 어종이 동일하고 정밀검사 항목과 기준·규격이 동일한 경우 동일 품명으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완화

**나. 축·수산물의 위생증명서 원본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확대(안 제9조)**

- 축·수산물의 수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위생증명서 원본의 범위를 원본과 함께 발행된 부본 및 축·수산물 검역기관이 원본을 확인한 사본으로 확대

**다. 수입식품등 관능검사 기준 명확화(안 제10조)**

- 1) 수출국에서 식용으로 관리하지 않은 수산부산물은 수입위생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수입이 가능함을 명확히 함
- 2) 축산물 관리수의사의 현물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방법을 현행에 맞도록 정비

**라. 잔류농약 정밀검사 항목과 무작위표본검사 항목 일원화(안 제13조 및 [별표 5])**

- 1) 농·임산물 등 잔류농약 검사는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 제8. 7.1.2.2. 다성분시험법에서 정한 항목 전체를 정밀검사와 무작위표본검사에 동일하게 적용하고, 정밀검사 잔류농약 검사항목([별표 5])을 삭제함.
- 2) 유해물질 검출에 따른 정밀검사는 해당 물질의 사용 원인이 되는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등 유해물질 검출 가능성�이 없는 제품에 대하여 해당 물질을 검사항목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

**마. 조건부 수입검사 사후관리 대상과 조건부 수입검사 대상에 따른 수입신고 확인증 발급 조건 명확화(안 제14조 및 제19조)**

- 조건부 수입검사 제품의 사후관리 대상을 명확히 하고, 경미한 표시사항 위반제품의 수입신고 확인증 발급 조건을 신설하는 등 규정 명확화

**바. 수산물 신규 품종 등록 조문 이동 등 (안 제15조, 제19조 및 [별표 8])**

- 수입신고서는 관세청 통관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를 신고하고 있고, 신규품종의 등록은 수입식품검사관의 현장검사를 통해 품명확인을 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

**사. 부적합 축산물 해외작업장 시정조치 절차 정비 (안 제17조)**

- 부적합 발생에 따른 시정 요청을 받은 수출국 정부의 조치 내용이 조항 내에서 중복되어 정비

**아. 부적합 인터넷 구매대행 식품 사후 조치 방법 개선(안 제18조)**

- 영업자가 부적합 인터넷 구매대행 제품에 대하여 주문취소 등 조치를 완료하였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‘부적합 수입식품등의 처리계획서’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

**자. 축산물인 제조용 원료 용도변경 신청 시 정밀검사 중점검사항목을 검사한 시험·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개정 (안 제21조)**

- 축산물인 자사제품제조용 원료 용도변경 승인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시험검사성적서 시험항목을 최초정밀검사 등 정밀검사 중점검사항목으로 개정하여 다른 품목과 일치

**차. 「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」에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합성품을 유해물질에서 삭제 등(안 제24조)**

- 국내 식품첨가물 공전에는 고시되지 않았으나 제외국에서 사용 중인 첨가물을 유해 물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, 식품공전 개정에 따라 유해물질의 인용 조항을 수정

**카. 검사결과 부적합이력이 없는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 범위 조정(안 [별표 1])**

- 최근 5년간 정밀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태국산 망고 및 호주산 과실주를 인정 범위에서 제외함

**타. 추가 관능검사를 위한 검체채취가 필요한 경우를 명확히 하고, 검체량 등을 기록·관리 할 수 있도록 정비(안 [별표 2] 및 표6)**

- 1) 검사관이 현장 관능검사 후 추가 관능검사가 필요하여 검체채취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
- 2) 수산물 관능검사 결과표에 관능검사 검체채취량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함

**파. 부적합 수입축산물에 대한 세부조치 기준 정비(안 [별표 7] 및 표8)**

- 1) 축산물에 대한 검사결과 검출된 물질의 위해도에 따라 부적합 축산물에 대한 세부 조치 기준을 개정
- 2) 부적합 축산물에 대한 세부조치 기준 적용을 위하여 그룹별 검출물질 정비

**하. 시행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조항 수정 (안 제17조, 제25조)**

- 1)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 마목에서 수입신고 제품에 대한 표시기준 등을 확인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 해당 내용 삭제
- 2) 수입최소량 관련 인용 규정(총리령 제1885호(2023. 6. 9)) 개정으로 인용조항 수정

## ◆ 「수입금지 식품등 고시」 변경 고시 (제2025-62호, '25.9.1.)

「식품위생법」 제21조제1항에 의거하여 수입금지 중에 있는 식품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5년 9월 1일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### 수입금지 식품등

연번	대상 국가	대상 품목
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영국, 프랑스, 독일, 이탈리아, 네덜란드, 벨기에, 룩셈부르크, 아일랜드, 덴마크, 그리스, 스페인, 포르투갈, 오스트리아, 스웨덴, 핀란드, 알바니아,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, 불가리아, 크로아티아, 체코, 헝가리, 리히텐슈타인, 마케도니아, 노르웨이, 폴란드, 루마니아, 슬로바키아, 슬로베니아, 스위스, 세르비아, 몬테네그로, 일본, 이스라엘, 캐나다, 미국, 브라질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반추동물 및 부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(우유, 유가공품 및 콜라겐케이싱 제외)</li> <li>- 다만, 아래 품목 및 이를 원료로 사용한 식품에 대해서는 수입 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우지가공품 : 원료로 사용한 우지가 불용성 불순물 함량이 0.15%이하임을 증명하는 수출국 정부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</li> <li>2) 젤라틴, 콜라겐 : 원피, 가죽 및 뼈에서 유래되었다는 수출국 정부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</li> <li>3) 제2인산칼슘 : 단백질과 지방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수출국 정부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(단, 소석회를 원료로 사용한 경우는 제외)</li> </ul> </li> <li>*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27조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 등 수입요건은 별도 확인 필요</li> </ul>

\* 우리 처 홈페이지 > 법령·자료 > 고시·훈령·예규에서 열람 가능

## 알려드립니다

### ◆ 영양표시 의무대상 확대 관련 안내자료(리플릿) 배포

- 내용: 2026년도부터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의무대상이 확대됨에 따라, 확대된 영양 표시 의무 품목 및 영양표시 제외 대상 등 안내
  - \* 세부내용: 붙임 2 참고

### ◆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수입금지 조치 알림

- 수입금지 대상: '25.8.17. 이후 선적되는 아르헨티나산 가금육
- 수입금지 제외 대상: 「지정검역물의 멸균·살균·가공의 범위와 기준」에 해당하는 품목
- 사유: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주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(HPAI)가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에서 수입금지 조치

### ◆ 식품첨가물 천연유래 인정 민원인안내서 배포

- 식품첨가물 천연유래 인정기준, 신청방법 등 업무절차 및 사례 공유
  - \* 세부내용: 붙임 3 참고
  - \* 다운로드 경로: 식품안전나라>홍보자료

### ◆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구비서류 목록 변경 알림

- 수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목록에 대하여 관련 고시\*\*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- \* 세부내용: 붙임 3 참고

\*\* 「수입금지 식품등 고시」(식약처 고시 제2025-62호, 2025.9.1.)

※ 수입식품정보마루 > 안전정보 > 수입검사관련 정보 > 증명서 제출

## [붙임 1] 수입검사 뉴스레터 신청서

- ◇ 경인식약청 수입관리과에서는 수입 식품등 및 위생용품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수입검사 관련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는 정책메일서비스(PMS; Policy Mail Service)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- ◇ 정책메일서비스(PMS)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, 아래 양식을 작성하시어 **수입관리과 팩스 (02-2110-0815)로 제출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정책메일서비스(PMS) 등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
1. 성명 (필수)					
2. E-mail (필수)					
3. 업소명 (필수)					
4. 관심분야(업종) (중복선택 가능)	1)수입식품( <input type="checkbox"/> ) 2)축산물( <input type="checkbox"/> ) 3)수산물( <input type="checkbox"/> ) 4)위생용품( <input type="checkbox"/> ) 5)신고대행업( <input type="checkbox"/> ) 6)보관업( <input type="checkbox"/> )				
<b>▶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목적 :</b> 경인식약청 수입관리과 정책메일서비스(PMS) 등 제공 ※ 수집·이용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.					
<b>▶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:</b> 성명, E-mail, 업소명					
<b>▶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:</b> 2년 (2년 주기로 재동의 안내 메일 송부, 보유기간 만료 후 자동파기)					
<b>▶ 동의 거부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</b> <p>☞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,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PMS 등이 제공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</p>					

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하십니까? 동의 (  ) 동의하지 않음(  )

년     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     일

성명 : \_\_\_\_\_(서명 또는 인)

경인지방식약청 수입관리과 전화 02-2110-8159 팩스 02-2110-0815